

稅務計劃이 節稅效果에 미치는 영향

康 熙 壽*

목 차

- I. 序 論
- II. 稅務會計學의 研究領域
- III. 稅務計劃
 - 1. 稅務管理의 領域
 - 2. 稅務計劃의 對象인 稅金
- IV. 節稅效果
 - 1. 損金算入의 節稅效果
 - 2. 租稅支援制度에 의한 節稅效果
- V. 結 論

I. 序 論

한국경제에서 조세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기업의 조세부담도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는 기업의 경영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다.

稅務計劃은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과 관련을 가지게 된다. 세법과 管理會計의 境界영역으로서 세무계획론은 일종의 세무관리회계라 할 수 있다.

節稅效果는 세무관리의 기초가 되는 개념이다. 기업이 창출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창출에 관계되는 모든 재무적 거래는 조세의 대외유출에 영향을 주게된다. 그러므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조세부담의 최소화는 매우 중요하다. 조세부담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기 때문에 경영자는 불필요한 조세부담을 피하고 합법적·합리적 방법으로 조세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여 법인세 등 차감후의 당기순이익을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세법은 그 선택에 따라 합법적으로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정히 적용하면 조세부담을 상당히 경감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 經商大學 會計學科

경영자는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 조세부담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세무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조세부담을 가장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야 할 것이다. 논리적인 세무의사결정을 하는 세무관리합리화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어질 것이며, 이는 국가나 기업에 있어서 모두 바람직한 방향이다.

본 논문은 세무회계학의 연구영역과 세무계획의 내용을 살펴보고, 세무계획수립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 절세대책을 검토하여 경영의사결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稅務會計學의 研究領域

세무회계학(science of tax accounting)은 租稅現像을 개별경제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특수회계학이다. 세무회계학은 세법과 회계학의 경제영역의 학문이며, 기업회계학, 법률학, 재정학, 경영학 등을 인접과학영역으로 한 새로운 학문영역이다.

세무회계학은 조세현상을 회계현상, 경영현상, 사회현상을 대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납세주체인 개별경제의 조세납부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을 확립하고, 조세부담의 공정한 배분질서를 형성하고, 개별경제와 국민경제와의 이해조정을 꾀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조세에 관련된 학문은 재정학, 회계학, 세법학 등이 있다. 재정학에 있어서의 조세론은 국가재정·지방재정의 입장에서 조세의 경제적 기능을 규정하고, 조세원칙을 조세체제로 하여 논한다. 재정학이 公的共同體의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조세를 연구하는데 대해, 세무회계학은 개별경제의 관점에서 개별납세의무자의 산출세액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세법학은 조세법을 법학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해명하고, 조세의 입법 및 해석, 적용이 법치국가적 요청에 적합한 것인가를 규명하는 것이 특징이다.

세무회계학의 연구는 원리론적 연구인 세무회계원리론과 기업경영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세무관리론의 연구, 세법 및 세무회계제도의 기초적 이해와 해명을 담당하는 세무회계제도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세무회계의 원리론적 연구는 實在的 세무회계의 불합리성·부적정한 문제점 등을 시정하고 개선 또는 개혁하여 이상적인 세무회계를 추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세법이 정하고 있는 과세소득의 계산규정이 세무회계적인 관점에서 타당한가의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

고, 적정타당한 과세소득의 계산체계 및 세무회계제도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주제로 하는 연구 분야이다. 세무회계원리론은 세무당국인 국가와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납세액 추정을 거시적 입장에서 이해조정을 도모하는 것을 중요한 기능으로 하며,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해 공정타당하게 조세를 배분하는 것을 이념으로 하고, 개별경제의 담세능력을 파악하고 측정하기 위한 세무회계원리의 확립을 과제로 한다. 세무회계원리론에서는 과세소득개념을 정의하고, 과세요건의 포착방법, 과세소득계산의 기초인 익금과 손금의 개념 정의 및 측정방법을 기초적·체계적으로 연구한다.

세무관리론은 기업이나 특정 개별경제주체의 경영의사결정 및 경영관리에 있어서 세무계획 또는 세무통제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세무관리론은 기본적으로 기업을 이익극대화(profit maximization)의 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경영활동에 관련된 제반 세무계획이나 세금통제를 통하여 세금차감후의 당기순이익의 극대화에 그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세무계획이나 세무통제는 경영의사결정에서 대체안의 선택문제로서 관리적 접근에 의하여 전개되고 있다. 기업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세무계획이나 세무통제를 경영계획에 도입하게 된다. 세무관리론은 전통적으로 사후적 회계처리나 과거의 실적수치 중심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전계획적 내지 사전관리적 입장에서의 경영자적 접근방법이다. 즉 세무관리론은 조세부담의 영향을 경영자적 입장에서 분석·검토하고 연구하는 실천적이고 의사결정적인 세무회계의 접근이라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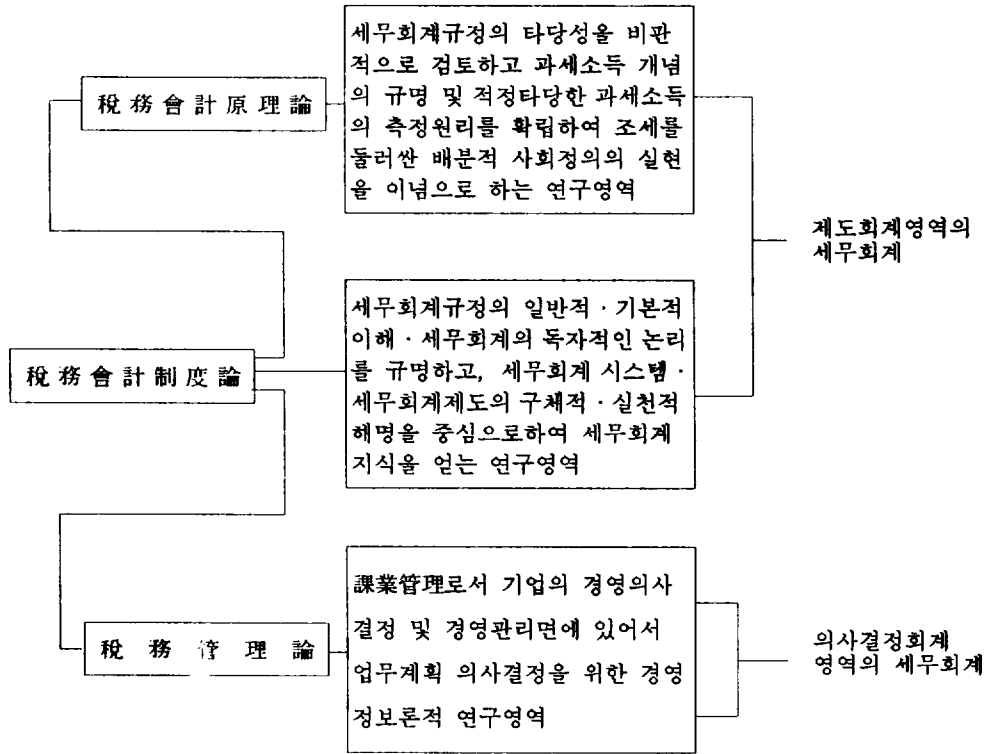
制度會計는 법률이나 규칙에 준거하여 행해지는 회계로 정의할 수 있다. 세무회계제도론은 실정조세법규(과세실체규정)에 준거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파악하는 현실적인 세무회계로서, 실제적 세무회계를 규명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세무회계제도론은 세무회계규정의 일반적·기본이해와 회계독자적·특징적 논리를 규명하며, 세무회계시스템·세무회계제도를 구체적, 실천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세무회계지식을 습득하는 연구영역이다.

세무회계학은 사회과학분야에서 새로운 학문분야로 발전하고 있다. 그 연구영역도 제도론적 연구, 관리론적 연구, 원리론적 연구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세무회계학의 연구체계를 요약하면 다음〈표 1〉과 같다¹⁾.

1) 富岡幸雄, 「稅務會計原理」, きょうせい, 1984, p. 14.

〈표 1〉 稅務會計學의 研究體系와 領域



Ⅲ. 稅務計劃

1. 稅務管理의 領域

세무계획은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에 있어서 비용이 되는 세금의 부담액과 부담할 시기를 검토하여 세금부담을 최소화 하는 經營戰略이다²⁾

경영계획을立案할 단계에서 기업은 그 계획을 실시할 경우 세금문제를 고려하여 이것이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것이고 최소의 부담인가를 검토하여 실시할 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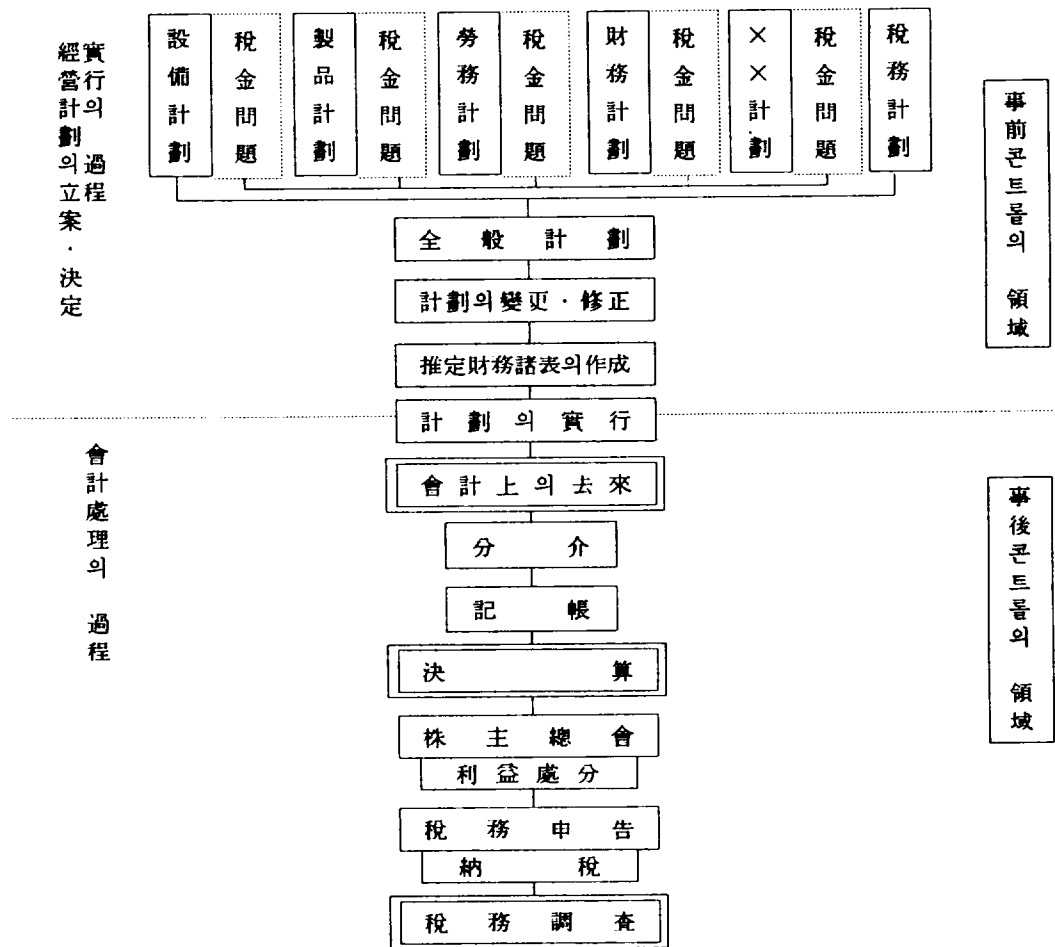
기업의 경영계획 대상에는 설비투자계획, 제품계획, 노무계획, 판매계획, 생산계획, 재무계획 등이 있으며 각 계획의 입안, 결정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세금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세무계획에는 다른 계획과 관련된 세무계획과 결산확정전에 결산정책으로 인하여 필요로 하는 세무계획으로

2) 齊藤泰, 「經營戰略의稅務」, きょうせい, 1981, pp. 40~44.

구분해 볼 수 있다. 어떤 계획이든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안을 작성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선택하는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세무계획을 확정하고 경영관리에 활용하는 것이 稅務管理이다. 세무관리에서는 회계처리의 과정보다는 경영계획을 立案하고 결정하는 事前過程에서 세금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무관리領域은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영전반에 관한 것이므로 합리적이고 유용성이 있는 세무계획을 세워야 한다²⁾.

<표 2> 稅務管理의 領域



2) 齊藤泰, 前掲書, p. 9.

2. 稅務計劃의 對象인 稅金

일반적으로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잔액이 된다. 이러한 이익에서 세금과 배당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회사내에 유보하게 된다. 따라서 세무관리에서는 세금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

세무계획의 대상이 되는 세금은 세무계획주체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모든 세금이 포함된다. 기업의 소득에 직접과세되는 소득세나 법인세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에 간접적으로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등의 간접세 및 지방세도 포함된다.

직접세는 소득을 과세객체로 하기 때문에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이 규제받게 되는 것이지만, 간접세는 원자재의 구입과 제품판매부분에 한정적으로 관련되므로 그 규제내용이 비교적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간접세 관리의 중점은 원재료 및 제품의 일상업무 관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 또는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액이 산정된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과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 있다.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으로는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의 매입시에 수취되는 매입세액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받고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접대비에 관련된 매입세액,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이다.

한편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의 경우는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금전등록기이면확인, 의제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대리납부세액 등이다.

간접세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예는 특히 부가가치세의 경우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즉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원재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의 경우 가능한한 덜 가공된 원자재를 구입하여 직접 가공하여야 부가가치세를 절세할수 있다. 이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입시에 부담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매입세액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과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 있다.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되지만, 재화나 용역이 면세사업에 사용되거나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 상당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지 못하며 기업의 비용이 된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免稅 또는 零稅率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판매가액의 再調整이 이루어진다. 免稅品目を 원재료로 하여 제품을 제조한후 판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

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제조원가가 낮아질수 있으며, 또한 영세율적용업체인 경우 제품판매금액에
는 간접세가 완전면세이기 때문이다.

物品販賣(搬出)를 課稅客體로 하는 間接稅에는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있으며, 이들 稅目
은 물품판매(반출) 당시의 정상적인 물품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特別消費稅의 경우에 있어서 물품을 판매(반출)한 후 일정한 금액을 買受者에게 반려하는
경우에는 당초 판매(반출)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割引額, 貸損金, 장려금과 이에 유사한 반려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기업의 판매정책에 따라 간접세의 절세효과는 달라지게
된다.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세금의 경우(지방세 등)에는 손금으로 산입되는
금액에 限界適用稅率을 곱한 금액만큼의 절세효과가 있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납세자의 부담이
된다.

한가지 租目에서 유리한 의사결정이 다른 세목에서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稅務計劃은 각종 세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IV. 節 稅 效 果

세무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무상 및 경영상의 代替的 선택의 원리를
활용함으로써 경영활동계획을 통한 稅控除後 이익의 극대화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기업의 사전
적 계획을 말한다. 그러므로 세무계획은 합리적인 절세계획이다.

세무계획은 관련된 稅目を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 論議
를 法人稅에 국한시켜 法人稅의 節稅를 위한 稅務計劃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租稅負擔額을 경감 또는 면제하여 주는 구체적인 방법을 세무회계의 입장에서 분류한다면 ①과
세소득계산에 있어서 損金算入·益金不算入調整을 추가로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소득금액을 줄이
도록 하여 그 결과 산출세액이 적게 되도록 하는 방법(損金算入), ②課稅標準을 계산할 때에
非課稅所得을 인정하거나 소득공제를 인정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줄이도록 하여 그 결과 산출세액이
적게 되도록 하는 방법(非課稅所得·所得控除), ③算出稅額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거나 산출세액
을 면제함으로써 납부세액을 적게하거나 없도록 하는 방법(稅額控除·減免稅額)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절세효과는 다음과 같이 損金效果和 租稅支援效果로 大別할 수가 있다.⁴⁾

區 分		發 生 原 因	節 稅 項 目
節 稅 效 果	損 金 效 果	當 然 損 金 算 入	支出經費：材料費，人件費 등 推定經費：一般償却費 등
	租 稅 支 援 效 果	國 家 的 租 稅 支 援	直接減免：非課稅所得，所得控除 免除所得，稅額控除 間接減免：特別償却，各準備金

1. 損金算入의 節稅效果

절세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서 절세효과의 발생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경우 기업의 모든 비용항목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되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이에 따른 節稅效果는 損金으로 산입하는 금액에 한계적용세율⁵⁾을 곱한 금액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현상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 損金效果는 特殊原價 중 回避可能原價와 유사한 개념이다.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稅負擔을 회피할 수도 있고 부담할 수도 있는 것을 回避하는 쪽으로 稅務管理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예로서 세법상 손금의 한도가 설정된 경우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등을 들 수 있다.

(1) 稅務計算上 損金限度가 設定된 경우

① 寄附金の 受贈者別 節稅效果

기부금은 타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재산적 가액을 말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된다. 이러한 세법상의 개념구분에 의하여 접대비는 지출항목의 내용에 따라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여 영업이익이 계산되며 기부금은 영업외비용으로 이는 영업이익의 계산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기부금은 세법상 일정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국가기부금, 지정기부금과 全額손금인정이 되지 않는 기부금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세법상의 차별에 기인하여 기업에서 지출한 기부금 중 受贈者별로 어떠한 節稅效果가 발생되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국가등에 지출하는 公共性 寄附金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제8조제1호에서

4) 申瓚秀·金在億, 「稅務管理論」, 조세통람사, 1988, p. 62.

5) 節稅效果를 계산하기 위한 法人稅 등의 合計稅率입.

규정하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⁶⁾ 내에서 기업이 제정한 국가기부금에 한계적용세율을 곱한 금액만큼의 절세효과가 있다. 사회복지법인 등에 출연하는 공익성 기부금(지정기부금)은 당해사업년도소득금액에서 국가기부금한도액 및 세법상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과 월평균자본금(50억한도)의 100분의 2 상당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며,⁷⁾ 사설단체 등에 기부한 금품의 가액(손금불산입 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부금을 지출하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에 따라 절세효과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기부금의 절세효과를 분석할 경우에는 기부금의 지출로 인하여 당해법인의 법인세 등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② 接待費의 支出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는 점에서 업무와 관련없는 기부금과 구별되며 기업과 관계가 있는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선전비와 구별된다. 접대비는 접대비, 교재비, 기밀비, 사례금,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있는 손금으로 인정하지만 접대비의 남용으로 인한 稅收減少의 방지와 조세 부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손금용인한도를 규정하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다.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액은 ① 정액기준(년 600만원), ② 자본금기준(월평균자본금×2/100), ③ 수입금액기준(당해사업년도수입금액×1/1,000)의 합계액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조정을 하여야 한다.⁸⁾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할 때에 기밀비는 별도로 용인한도액을 정해 놓고 있어 접대비 전체로는 한도초과액이 생기지 않아도, 기밀비만으로 한도초과액이 생겨 손금불산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접대비의 절세효과는 기밀비 자체의 한도초과 여부와 접대비의 한도초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접대비와 기밀비 한도초과 여부를 동시에 감안하지 않으면 접대비의 절세효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된다.

해외접대비는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전액 손금에 산입하게 되는 반면에, 접대비 한도액계산시 외형금액에서 외화수입금액의 60%(해외접대비×1,000×60%를 한도로 함)를 공제⁹⁾ 하기 때문에 접대비의 절세효과에 불리한 영향을 주게된다.

6)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7)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2호.

8) 법인세법 제18조의 2.

9)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18조의2 제2항.

회사의 접대비 지출액 중 세법상의 손금산입범위내에서는 한계적용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절세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며, 세법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의 경우는 절세효과가 없는 것이다. 접대성 경비는 지출규모가 크고, 회사 각 부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대비의 절세효과는 평소에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의 내부통제 실시에 있어서 접대비의 지출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에서 부터 지출완료에 이르기 까지 엄격한 통제를 받는 것이 통례이고, 새무당국에서도 접대비를 不實經費 검토항목으로 중점관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減價償却

고정자산에 대한 절세효과는 감가상각·세액공제·준비금 등 매우 광범위하게 관련되고 있다. 그 중 기업실무상 감가상각의 절세문제가 고정자산의 취득단계에서 부터 논의되는 사항이며, 취득 이후에도 감가상각정책은 회사의 당기순이익 조정과 법인세 등의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회사의 실정에 적합한 감가상각방법의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감가상각의 손금산입으로 발생하는 절세효과는 감가상각방법(정액법·정률법)과 租稅支援助制度(일반상각·특별상각·일시상각)의 내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된다. 감가상각방법의 결정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또는 대폭적인 増設 등으로 인하여 변경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일상적인 관리항목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감가상각 실시액의 크기를 결정하는 조세지원제도의 내용은 月次決算에서 부터 사업계획 및 투자의사결정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하게 관련되고 있으므로 평소 절세효과에 대하여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3) 團體退職保險加入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납입하고 그 보험료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단체퇴직보험료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推計額에서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세법상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서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에서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한다. 여기서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라 함은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보험회사에 붙입한 단체퇴직보험료 누계액에서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퇴직한 자에게 지급한 퇴직보험료에 상당하는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단체퇴직보험의 가입은 강제성을 띄는 것이 아니다.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10)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하는 것은 곧 세부담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므로 節稅를 위해서 회사는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節稅를 위한 것과 종업원의 후생정책을 위해서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겠다.

(4) 資產의 時價評價

현행 세법상 부동산 등 자산의 평가차익은 익금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공정한 감정가에 의하여 평가증을 할 경우에는 그 재평가액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익이 실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산의 평가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나 결손금 공제기간의 도과로 소멸되는 이월결손금을 이용할 목적으로 자산을 재평가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를 평가증하고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세부담없이 자기자본을 증가시키고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양도차액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세계개편에서는 이러한 조세부담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평가차익에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이 경우 공제가 제한되는 것은 이월결손금에 한정되므로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과 부동산의 평가차익과는 서로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다.¹¹⁾

(5) 支給利子 損金不算入

기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부터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 이때에 발생하는 타인자본의 자본비용을 지급이자라한다.

세법상 지급이자지는 다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운영자금이자, ②채권자가 불분명한 私債이자 ③비업무용부동산 및 업무무관 圖書·골동품 保有에 관련된 지급이자 ④타법인주식취득자금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관련한 지급이자 ⑤건설자금이자 등이다.

이 가운데 운영자금의 이자는 세법상 손금으로 용인되고 있는 반면, 그 외의 경우는 세법상 손금불산입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他法人 주식취득의 경우를 보면 회사가 세법에서 규정하는 재무구조에 미달한 상태(총 차입금의 적수>자기자본의 적수×2배)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취득자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상당

11)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
법인세법통칙 2-2-7 ...9 자산평가차익의 범위.

액을 손금불산입¹²⁾하게 되므로 법인세 등의 부담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당해 주식취득으로 인한 투자수익에 관한 내용은 세무관리의 입장에서 주식보유로 인한 세무상의 손실금액을 파악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회사가 他社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세무관리적 측면에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주식취득자금의 지급이자 상당액 손금부인¹³⁾
- ② 부당행위 계산의否認

소액주주의 범위를 초과하여 출자할 경우 당해회사와 출자회사는 특수관계를 형성하므로 兩法人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상 부당행위 여부의 규제를 받게된다.

2. 租稅支援制度에 의한 節稅效果

(1) 直接減免의 節稅效果

直接減免은 조세부담을 연기하거나 임의회피방법이 아니고 세법규정을 적극활용하여 산출세액을 공제하거나 또는 손금을 늘려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節稅를 하는 것이다. 직접감면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유지한다면 그 節稅額을 다시 負擔하지 아니하는 것이 間接減免과 다른 것이다.

直接減免의 경우는 ㉠ 非課稅所得 ㉡ 所得控除 ㉢ 稅額控除 ㉣ 稅額減免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非課稅所得

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조세정책적인 특정소득을 비과세소득이라 한다. 현행 법인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한 소득은 公益信託의 신탁재산에서 생긴 소득¹⁴⁾ 이 있다.

비과세소득이 익금불산입 항목과 다른 점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익금불산입은 이로 인한 결과가 이월결손금의 크기에 반영되어 당해 연도의 사업년도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차기

12)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2 제6항 제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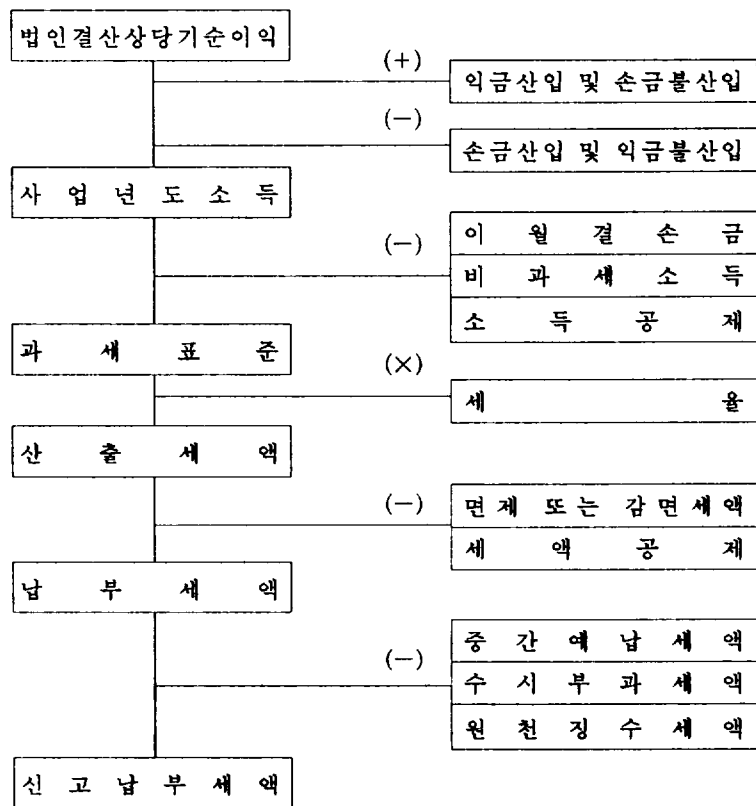
13) 법인세법 제18조3 제2항 제1호.

14) 법인세법 제10조

이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비해, 비과세소득은 이의 결과가 이월결손금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비과세소득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당해연도 또는 그 이후 사업년도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非課稅所得의 節稅效果는 공제받을 수 있는 비과세소득금액에 한계적용세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

〈표 3〉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구조



② 所得控除

소득공제는 조세정책적 목적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특정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기 위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기업에 관련되는 소득공제는 기술소득공제(조감법 19조 제3항), 기술용역사업소득공제(조감법 20조), 해외사업소득공제(조감법 26조), 축산업소득공제(조감법 37

조), 증자소득공제(조감법 55조)가 있다.

소득공제는 공제대상이 되는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이 각 사업년도의 소득을 초과할 때에만 그 초과하는 금액에 한계적용세율을 곱한 금액만큼의 절세효과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는 감면 등을 받은 후의 세액과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 중 많은 것으로 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최저한세제도).

내국법인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한다¹⁵⁾(조감법 제91조 제1항).

③ 稅額控除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은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그 산출세액에서 免除所得 및 減免所得에 대한 세액을 면제 또는 감면하고, 다시 세법에서 정한 세액공제액을 차감한 나머지 세액이 된다.

현행 세액공제제도는 법인세법상 세액공제제도와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공제제도가 있다.

법인세법상 세액공제제도는 외국납부세액공제(법법 제24조의3)와 재해손실세액공제(법법 제25조)로 구분된다.

내국법인이 외국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점 등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그 나라의 세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외국에서 생긴 소득은 우리 나라의 세법에 의하더라도 법인세가 부과된다. 그렇게 한 결과, 내국법인의 외국사업장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쌍방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현상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이중 과세의 모순을 없애기 위해 현행 세법에서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세표준과 외국에서 생긴 소득중 과세표준에 산입된 금액의 비율만큼의 법인세산출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2의 규정은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 특례규정을 두어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방안과 손금산입방안 중 기업에서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납부세액은 손금산입의 경우 보다 세액공제방안이 기업에 유리할 것이나, 當期에 결손이 발생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租稅公課계정으로 계상하여 이월결손금에 그 금액을 포함하면 차기 이후에 절세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외국납부세액은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액공제 해당 사업년도에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이 이월공제되지 아니하므

15)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전입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로 기업은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조항에서 결손이 발생한 사업년도에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하게 되면 당해 세액이 이월결손금에 가산되어 차후의 법인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므로 기업의 일방적인 손실을 어느정도 보상받게 될 것이다.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하고 있는 세액공제는 기술 및 인력개발(조감법 제17조), 신기술기업화에 대한 투자(조감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용 시설투자(조감법 제18조 제2항), 의료취약지역병원신설에 대한 투자(조감법 제40조의5 제3항),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조감법 제43조), 법인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투자(조감법 제43조의2), 산업합리화에 따른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조감법 제46조의3 제1항 제1호), 특정설비투자(조감법 제71조), 임시투자(조감법 제72조),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조감법 제72조의2), 기숙사투자(조감법 제72조의5) 등이 있다.

세액공제는 정부가 기업에게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 또한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서로 다른 한계적용세율에 처하게 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같은 금액의 절세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세액공제는 당해년도에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유효한 것과 당해년도에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차기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것이 있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最低限稅(조감법 제88조)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과세년도의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로 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¹⁶⁾

따라서 이월공제의 문제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最低限稅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발생하게 된다.

세액공제의 절세효과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투자나 지출금액에 한계적용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나타낼 수 있다.

④ 免除稅額

세법에서 규정한 특정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免除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가 免除되는 소득을 免除所得이라 하고 면제소득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免除稅額이라 한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인세 면제소득은 기술소득 중 특허권 등의 대여소득(조감법 제19조 제1항), 해외자원개발 투자배당소득(조감법 제30조), 산림개발소득(조감법 제38조), 공장양도차익(조감법 제42조), 수도권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조감법 제42조의2), 중소기업사업전환

16)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제1항

(조감법 제45조의2), 산업합리화에 따른 양도자산(조감법 제46조 제2항), 기숙사운영사업자(조감법 제72조의6) 등이 있다. 이러한 免除所得에 해당하는 법인세 상당액에 대해서는 그 減免比率이 100%인 稅額減免이 이루어진다.

한편 법인세의 減免이란 외자도입법상 면제대상사업에서 생긴 소득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전액 또는 일정율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減免하는 것을 말한다.

외자도입법과 조세감면규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투자지분(외도법 제14조), 창업중소기업(조감법 제15조), 농공지구입주기업(조감법 제40조의4), 병원취약지역병원신설(조감법 제40조의5) 등이 있다.

세액감면의 절세효과는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에 감면이 없었다면 부담하였을 한계적용세율을 곱하고 이를 다시 감면비율과 곱한 금액으로 나타난다.

(2) 間接減免의 節稅效果

① 準備金の 計上

세법상 준비금이란 당해 사업년도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은 아니지만 특정사업에 대하여 장차 발생할 비용이나 또는 施設改替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비용으로 계상하고 일정기간 경과후에 환입하거나 실제로 발생된 비용에 충당하게 하는 세법상의 손금이다.

준비금은 소득공제나 세액감면 등의 직접지원제도와는 달리 특별상각과 더불어 일정기간 課稅를 猶豫하여 주는 간접지원제도의 일종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투자에 관련한 의사결정방법으로 割引現金 흐름에 의한 경제성 평가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로서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간접지원에 의한 절세효과를 純現在價値法의 경우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투자결정을 비롯한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은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투자로 부터 얻어지는 대가는 미래에 실현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러한 투자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해 주어야 한다. 순현재가치법은 이와 같이 투자로 부터 발생하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비교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조세감면규제법상의 諸準備金計上에 따른 현금유입의 절세금액과 同準備金の 還入(미사용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 포함)으로 인한 현금유출의 차이인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면 준비금을 계상함으로써 순현재가치 만큼의 절세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준비금은 일정기간 課稅를 유예하는 조세지원의 일종이기 때문에 세법이 정하는 한도내에서는 임의로 설정할 수 있지만 일단 설정한 준비금의 환입에 있어서는 소득조작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의환입을 규제하고 있다.

자산취득이나 비용충당을 위한 준비금은 임의환입이 인정되지만, 손실補塲을 위한 준비금은

임의환입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를 각준비금별로 구분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구 분	자산취득이나 비용충당을 위한 준비금	손실보전을 위한 준비금
종 류	① 지방이전준비금·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 ② 중소기업·광업·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수도권의 소재 기업투자준비금 ③ 기술개발준비금 ④ 국제무역산업박람회 참가준비금	① 수출손실준비금·해외시장개척준비금·해외사업손실준비금·해외투자손실준비금 ② 투융자손실준비금
미 사 용 시	이자상당액을 추징함	추징규정 없음
임 의 환 입	인정됨	인정되지 않음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이 자산취득이나 비용충당을 위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일정기간 내에 이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자 상당액의 추징대상이 되는 준비금은 기업이 임의로 법정기한전의 조기환입을 인정하지만, 손실보전을 위한 준비금인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후 일정기간 경과후까지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이자상당가산액의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준비금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早期還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업이 임의로 법정기한 전에 조기환입을 하는 경우에도 익금에만 산입하지 아니할 뿐 당해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산업년도까지 소급하여 손금불산입하지는 않는다(감통 3-4-2... 13).

자산취득이나 비용충당을 위한 준비금중 미사용준비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으로 하려면 미사용 준비금의 환입시기를 조정하는 소극적 방법과 미사용준비금 상당액을 상계할 수 있는 투자안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다.

② 特別償却

損金으로 조기에 산입해 주는 세금혜택 가운데 하나가 특별상각제도이다. 이 경우 절세효과는 조기상각되는 금액에 한계적용세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

특별상각은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상하여 법인세를 줄이는 대신에 감가상각을 행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어 후기에는 감가상각비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특별상각과 준비금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감면규제법에서의 최저한세를 적용하여 각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특별상각·준비금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의 100분의 12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 중 많은 것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상각과 준비금의 선택문제에 있어서 특별상각과 각 준비금은 다 같이 결산방침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항목이나, 회사의 결산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다.

첫째,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특별상각은 계상주의원칙에 의하여 기업회계상 당기의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의 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나, 준비금의 경우에는 申告調整이 가능(외부감사대상법인)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의 크기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둘째, 절세효과의 계산상 機會原價의 존재여부이다. 특별상각은 당기 범위액 중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동 금액은 차기이후의 기초가액으로 이월되는 것이므로 절세효과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준비금의 경우에는 세법상의 설정한도액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당기에 설정하지 않으면 절세효과가 전혀 없어지는 것이다.

특별상각과 투자세액공제와의 관계에서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지원은 투자세액공제를 인정하는 한편 동 자산에 대하여 특별상각제도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산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와 특별상각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 중 택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⁷⁾ 따라서 투자세액공제와 특별상각 중 기업에 유리한 방안을 선택하여 절세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법인세 등의 절세효과에 관계되는 단체퇴직보험료, 특별상각 및 제준비금 등 계상으로 인한 절세방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한을 받게 된다.¹⁸⁾

- ① 법인에 결손이 발생하여 추가로 손금을 계상할 수 없을 때
- ② 회사의 결산정책상 일정수준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할 필요가 있을 때
- ③ 조세감면규제법의 최저한세제도의 제약을 받을 때
- ④ 법인세 등을 일정수준이상 유지하고자 할 때 등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어진 여건하에서 회사전체로서의 절세효과가 최대가 되도록 절세방안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각 절세방안의 실질적인 절세효율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합리적이다.

$$\text{절세공헌율} = \text{실질적 절세효과} / \text{손금산입액} \times 100$$

위 산식에서 실질적인 절세효과는 당해 손금산입항목의 순현재가치를 말한다.

17)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1항

18) 申瓚秀·金在億, 前掲書, pp. 67~68.

V. 結 論

지금까지 기업의 세무계획이 절세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았다.

조세의 기본원칙이 公平課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산업국가에 있어서는 투자촉진·기술개발·수출증대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사회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을 誘導하고 있다.

즉 국가는 諸準備金の 손금산입·특별상각제도·소득공제제도·면세소득·세액공제 등의 조세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장치하고 기업이 이러한 立法意圖에 충분히 적응하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기업의 실상은 이에 훨씬 미흡하다고 본다.

기업은 각종의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세금부담의 최소화를 위한 세무계획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절세효과는 특정한 세무계획이 기업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어 법인세 등의 크기를 변화시키거나 소득공제·세액공제·각준비금의 계상으로 법인세 등이 감소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업실무에 있어서 이러한 절세효과를 고려하고, 세무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경영관리자는 절세효과의 내용에 대하여 깊이 있게 검토한 후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경영계획에 있어서 세무계획이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경영계획에는 설비계획, 생산계획, 판매계획, 자금계획 등이 있는데 이들과 유기적으로 관련을 시키면서 경영계획의 일환으로 세무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기업이 항상 접하는 세금문제를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에 의하여 사전에 계획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